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범위 정비 및 영업규제 신설)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8/13 개정 · 2024/8/14 시행)

1) 개정 이유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결정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 정비(제102조 제1항)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
 - 단방향 채널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이 해당
 - SNS ·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
 - 위반 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 신설(제102조의2, 별표 20)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여야 함
 -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
 -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금지
 -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금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광고 등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

□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 규제 정비(부칙 제2호)

-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 불수리 사유를 확대
-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 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 추가
 -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
-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사투자자문업의 갱신신고 절차 마련(제102조 제2항)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